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8. 19.(월) 배포 즉시

배달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8.19.(월) 매일노동뉴스, 올해 죽거나 다친 배달라이더 '하루 8명' 기사 관련

2. 설명 내용

□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부터 **보호 필요성이 높은 13개 직종**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**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안전·보건조치 의무를 규정**하고 있으며,

○ 배달종사자의 경우 **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**해 플랫폼 운영사에 대하여 ▲**안전모 착용 지시**, ▲물건의 수거·배달 등 **소요 시간** 과도한 **제한 금지**, ▲노무 제공 전 **교통 안전 관련사항 교육** 등을 **의무화**(위반시 과태료 1,000만원 이하)하여,

–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도록 매년 **플랫폼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**을 실시하고,

– 주행 중 **어플리케이션 확인**이 배달종사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, 이를 **최소화**하도록 시스템 개편 등도 지도하고 있음

□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배달종사자(퀵서비스기사)에 대해서 **'12년 5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**하고 있으며,

○ **'23년 7월부터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**하여 여러 배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**보호범위를 확대**하였음

○ 이에 따라 **산재보험 가입자 수**는 11만명('23.6월)에서 30만명('24.5월)으로 **약 3배 증가하였고, 보상받는 사례**도 **연계하여 증가하는 추세*임**

* 산재승인건수: ('20) 2,070건 → ('21) 3,963건 → ('22) 6,062건 → ('23) 6,534건

□ 향후 **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와 함께** 플랫폼 운영사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확산하는 등 배달종사자의 **교통사고 예방**을 위한 **노력을 지속**해나가겠음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	책임자	과 장	박원아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상 (044-202-8852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원주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	최해리 (044-202-884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